

(앞쪽)

(뒤쪽)

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납부통지서 (국토교통부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청 보관용)	
관리번호	
행위허가 내용	
납부자 주소	
납부자 성명 (대표자)	
납부금액 (납기 내)	
가산금	
(납기 후) 년 월 일까지 내야 하는 금액	
납부 장소	
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위의 납부 장소에 내시기 바랍니다.	
년 월 일	
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·군수·구청장	
귀하	

적인

(앞쪽)

(뒤쪽)

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납부통지서 (납부고지용)	
관리번호	
행위허가 내용	
납부자 주소	
납부자 성명 (대표자)	
납부금액 (납기 내)	
가산금	
(납기후) 년 월 일까지 내야 하는 금액	
납부 장소	
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위의 납부 장소에 내시기 바랍니다.	
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 직인	

산출 근거 및 이의신청 안내

1. 근거법령

-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4조 및 제25조
-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
-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」 제19조

2. 산출방법

- (A-B)×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×부과율
- A: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·군 또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
 - B: 허가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

3. 이의신청

이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7조에 따라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,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※ 산출근거: 뒤쪽 참조

(앞쪽)

(뒤쪽)

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영수확인통지서 (국토교통부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 ·구청에의 통보용)	
관리번호	
행위허가 내용	
납부자 주소	
납부자 성명 (대표자)	
납부금액 (납기 내)	
가산금	
납기 후 년 월 일까지 내야 하는 금액	
납부 장소	
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.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국토교통부장관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

--

(앞쪽)

(뒤쪽)

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영수확인통지서 (수납기관 보관용)	
관리번호	
행위허가 내용	
납부자 주소	
납부자 성명 (대표자)	
납부금액 (납기 내)	
가산금	
납기 후 년 월 일까지 내야 하는 금액	
납부 장소	
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.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국토교통부장관 ·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	

--

(앞쪽)

(뒤쪽)

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영수확인통지서 (납부의무자용)	
관리번호	
행위허가 내용	
납부자 주소	
납부자 성명 (대표자)	
납부금액 (납기 내)	
가산금	
납기 후 년 월 일까지 내야 하는 금액	
납부 장소	
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.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국토교통부장관 ·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	

--

가로 475mm 세로 268mm 각편(가로 95mm 세로 268mm)[일반용지60g/m²(재활용품)]